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한 인터넷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만 방문 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시 10:00 ~ 14:00시까지 자격입증 서류 및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방법은 해당 기관의 추천순위에 의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일정 및 면적,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결정합니다.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 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안내문 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당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개요 및 일정 안내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6-1번지(청라국제업무단지 M5BL)
■ 공급규모 : 지하 5층 ~ 지상 최고 44층 / 3개동 / 총 868세대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입주예정 :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총 세대수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84A	84.9443	37.2676	122.2119	6.1644	189.2730	248	45
	84B	84.9210	36.7429	121.6639	6.1628	188.7066	124	24
	84C	84.8592	35.4322	120.2914	6.1583	187.2853	124	28
	84D	84.9540	36.9529	121.9069	6.1651	188.9756	124	25
	103A	103.8518	43.1930	147.0448	7.5366	229.0329	124	13
	103B	103.9916	44.2084	148.2000	7.5467	230.2984	124	11
합계							868	**146**

※ 상기 내용은 사업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 85㎡이하 10% 범위 내 공급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8조 공급세대수 10% 범위 내 공급

(단위: 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84A	84B	84C	84D	103A	103B	계
경제자유구역		26(130)	11(55)	13(65)	12(60)	13(65)	11(55)	86(430)
국가유공자		3(15)	2(10)	2(10)	2(10)	-	-	9(45)
장기복무 제대군인		3(15)	2(10)	2(10)	2(10)	-	-	9(4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15)	2(10)	2(10)	2(10)	-	-	9(45)
중소기업 근로자		6(30)	4(20)	6(30)	4(20)	-	-	20(100)
북한이탈주민		-	-	-	-	-	-	-
장애인	경기도	1(5)	1(5)	1(5)	1(5)	-	-	4(20)
	서울특별시	1(5)	1(5)	1(5)	1(5)	-	-	4(20)
	인천광역시	2(10)	1(5)	1(5)	1(5)	-	-	5(25)
계		45(225)	24(120)	28(140)	25(125)	13(65)	11(55)	146(730)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각 주택형 및 기관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합니다.
※ 괄호( ) 안의 수는 예비대상자(500%) 세대수입니다.

■ 공급일정**(예정)**

구분	공급일정**(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 2026년 10월 08일(목) 예정	-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
견본주택 개관	• 2026년 10월 16일(금) 예정	-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7-1번지)
특별공급 접수일자	• 2026년 10월 19일(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당첨자 및 동·호수발표	• 2026년 10월 27일(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계약체결	• 2026년 11월 06일(금) ~ 11월 09일(월) 예정	-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7-1번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단, 견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지참 필수 및 필요서류 견본주택 문의)

※ 상기 계획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특별공급 요건 및 당첨자 선정방법, 유의사항 등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
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에 외국인이 청약 시 무주택자 요건)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경제자유구역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 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지역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 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td></tr>
</table>

■ 유의사항

- 상기 공급일정 및 면적 등은 인·허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입주자모집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견본주택,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 최종 통지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지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 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전 서류 확인 및 관계기관의 전산검색을 통해 거주요건, 과거당첨사실, 주택소유사실 등 입주대상자 및 세대원의 자격확인을 통해 부적격 사항 확인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분양문의 및 견본주택 위치



현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6-1번지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7-1번지

■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7-1번지
■ 현장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6-1번지
■ 분양문의 : 1551-6881

Ⅳ 사업지 위치도

